요 약

Ⅰ. 서 론

■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음.

○ 특히, 2014년 1월 8일 검찰의 발표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활용가치가 존재하는 바, 이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법제의 다기화 및 중첩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험정보주체의 보호 강화방안 및 보험산업의 특성 반영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함.

Ⅱ.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 개인정보란 '개인'과 '정보'라는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로서 '낱낱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자료(데이터, 기록)'라고 폭 넓게 해석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됨.

▒ "보험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보험정보 중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보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여기서 보험정보는 '보험거래 및 그 부수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인정보는 보험거래 관련 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마케팅 관련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직원 인사관리 관련 정보 등으로 대별됨.

Ⅲ.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1.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 2011년 이전까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 및 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개별 개인정보법률이 제정되어 왔음.

○ 2011년 개인정보법률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한편, 보험개인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주된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보험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음.

<요약 표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 체계

규제대상(분야)		규제법률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부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사적부문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통신사업자	통신비밀보호법
	의료기관	의료법
	⋮	⋮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검토

▒ (관계법령 간의 적용순위)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인 개별법들 간에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

○ 특별법에 해당하는 개별법률 간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는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대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보험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적용순서가 결정될 것임.

<요약 표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간 적용 순위

구분	법률 간 적용 순위
오프라인보험	보험업법등 개별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보험	보험업법등 개별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 (수집)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므로 동의를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가능함.

○ 현재 보험회사는 후자에 따라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모두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자가 수집동의를 수령해야 함.

■ (이용)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이고, 동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거나 각 법에 열거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제3자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목적 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보험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목적 외 제공이라 하여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용정보법상의 동의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법은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보험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으면 족하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수집목적 외 제공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신용정보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정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보험개인정보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제한됨.

■ (민감정보의 처리)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 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질병정보 외의 민감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위탁) 보험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보험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절차(위탁내용의 주기적 통보, 수탁자의 관리·감독 등)는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파기)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파기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어 불이익 정보(5년 이내 삭제)나 폐업(지체없이 폐기) 이외의 경우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 열거된 파기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재된 파기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

가. 적용 법률의 불명확 및 중첩 적용

▒ 현행 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일반법과 개별법 간의 규율범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함.

○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간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률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명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체계상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짜깁기되어 모자이크법의 형태로 적용된다는 것임.

▒ 또한 규제의 취지가 상이한 다수의 법률들이 보험개인정보에 중첩적으로 적용된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선임 등 여러 부문에서 중복되는 규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남.

나. 정보주체의 보호 미약

▒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보험거래 과정 이외에 마케팅, 업무제휴 또는 대리점 등록과정에서 다소 불건전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임.

▒ (사전동의제도의 남용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는 사전동의제도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방법으로 제시함.

○ 그러나 실무상 포괄적 동의 등에 의해 얻어진 사전동의는 '정보활용의 면죄부'처럼 활용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

■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미흡)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상으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나, 수집동의권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수집동의 절차의 복잡성) 최근의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동의 항목의 과다 및 동의 절차의 복잡화 등에 따른 설명미흡과 생략으로 오히려 고객의 권익보호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 보험산업의 특성 미반영

■ (엄격한 동의주의 적용 곤란) 보험거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동의 수령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사전동의를 엄격히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극히 제한되어 보험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함.

■ (언더라이팅에의 활용 제한) 보험회사는 적절한 언더라이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소득정보, 건강정보, 신용정보 등이 필요함.

○ 특히,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거절자 명단, 보험인수유의자 명단의 공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현재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Ⅳ. 제 외국의 입법례 및 활용실태

1. 각국의 보험개인정보 관련 법률

■ 미국에 있어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GLB법, FCRA, HIPPA, NAIC 모델법, NCOLI 모델법 등임.

○ GLB법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제시함.

○ NAIC표준모델법은 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개인정보를 개인금융정보와 개인건강정보로 구분하여, 개인금융정보는 opt-out제도로 운영하고 개인건강정보는 opt-in제도로 운영함.

○ NCOIL모델법은 NAIC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GLB법 제5장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조항의 주별 채택을 목적으로 공표됨.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은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opt-in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험정보도 동 법률의 적용대상임.

○ 이외에 금융 및 보험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로는 소비자신용법, 의료기록 접근법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정보처리법이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적용됨.

○ 보험업의 경우 정보처리법 제17조에 근거한 「간략화 규범」의 제16호에서 개인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하여 언급됨.

■ 일본의 보험개인정보는 금융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됨.

2. 보험개인정보의 활용현황

가. 미국

■ 의료정보국(MIB)은 1902년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보험자의 의료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정보교환 시스템임.

○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방지, 보험사기 방지 및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위한 보험기록과 병력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음.

■ ISO(Insurance Service Office)는 보험회사 등에 데이터 제공·분석 및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업인 동시에 권고요율단체임.

○ ISO의 클레임 서치는 보험사기 인지·방지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는 보험회사는 물론 경찰에서도 조회가 가능함.

○ ISO는 자동차 및 재산손해와 관련하여 A-PLUS라는 최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언더라이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 영국

■ 보험사기방지국(IFB)은 1995년 영국보험자협회(ABI)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범죄 및 사기방지 조치에 대한 조정기구임.

○ IFB는 보험사기 전과자 등의 인물정보(black list)를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자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보험데이터서비스(IDSL)는 최근 5개년 클레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인수정보 교환시스템(CUE)과 모든 자동차 클레임을 등록하여 기존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사기성 청구를 가려내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대책 및 도난등록시스템(MIFTR)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자기구(MIB)는 무보험차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가입정보를 제공하는 활동과 함께 자동차보험 데이터베이스(MID)를 운영하고 있음.

○ 경찰은 물론 운전자, 차량면허국 등도 MI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

다. 프랑스

■ 보험사기방지국(ALFA)은 보험회사에의 보험사기 관련 정보제공, 수사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ALFA에서는 보험사기의 의문이 있고 사기를 의도하였거나 사기로 보고된 사실이 있는 보험금 청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보험도난품수색·식별 경제이익단체(ARGOS)는 도난차·도난품의 수색, 회수 및 동일성 확인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보험회사 및 경찰에게 도난차량·도난품의 데이터베이스, 도난차량수색 및 방범정보를 제공함.

라. 일본

■ 일본에서 보험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는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가 있음.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하여 손해액 산정, 요율산출, 보장사업 조사 등을 위한 정보를 집중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계약내용, 사고 상황, 보험금 청구내용 관련 정보 등을 집중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공동센터(Life Insurance Network Center)를 통해 생명보험정보의 등록 및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Ⅴ.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1.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

가. 보험개인정보의 해석 원칙 및 처리 기준 마련

▒ 정책당국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인해 불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수 법률 간의 상호중복·충돌·누락요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석 및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분야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어 강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준수에 따른 책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선순위 법률 규정의 취지가 후순위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나. 개인정보법률 간 체계 재정비

▒ 우리나라 개인정보법률 간의 정합성 부족문제의 해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간의 중첩규정들을 일반법-특별법의 법률관계의 법리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더불어 인터넷이 기본 인프라로 정착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특수하게 규율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다.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일원화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법률의 통합작업이 성사될 경우, 동 통합법률 내에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개인정보에 관해 우선하여 적용되는 보험분야의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①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나, ② 보험산업의 근거법률인 보험업법을 보험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이 있음.

2.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

가.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강화

▒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보주체가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조회망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가 자기정보의 이용·제공현황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확인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한편, 최근 정부는 카드 유출사태 이후 각 업권별로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나. 보험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 업무제휴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보험회사의 책임강화

○ 보험회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회사에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의 보험마케팅 시 개인정보 이용 제한

○ 대량의 고객을 보유한 회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경우 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보험모집인의 비밀준수의무 및 개인정보 누설금지의무 신설

○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준수의무나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의무를 보험업법상에 신설하여 보험고객정보 보호 의식을 제고함.

다. 사전동의 수집제도의 합리화

■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제1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어 동의를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제2안)이 모두 가능한 바,

○ 본고에서는 제2안에서처럼 수집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제1안처럼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제3안)을 제시함.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

가. 공동이용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마련

▒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동의예외조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의예외조항은 인적예외조항과 목적별 예외조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먼저,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인적예외조항이 필요한 바, 보험계약은 사전에 계약상의 이해관계자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수령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보험정보의 활용목적별로 동의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존재하는 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통계 작성, 중복보험(계약 및 사고) 확인, 보험범죄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경우 등이 그것임.

▒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수집과 정보주체로의 통지사항을 정보제공 목적별로 요약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요약 표 3> 보험개인정보 제공목적별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제공목적	공동이용		제3자 제공		연간이용내 역통보
	동의	통지	동의	통지	
보험범죄 방지	×	×	×	×	×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	×	×	×	×	○
중복보험 확인	×	×	×	○	○
보험인수 심사	×	○	○	○	○
보험마케팅에의 활용	○	○	○	○	○

나. 언더라이팅에의 활용 근거 마련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거절자 명단, 보험인수유의자 명단의 공유를 통해서 적정한 언더라이팅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 정보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미국 ISO, 영국 범죄·사기방지국, 프랑스 보험사기방지국에서는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범죄자(적발자) 명단을 공유하고 있음.